

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7. 4. 25. 제 천 시 장
- 회 부 일 : 2007. 4. 25.
- 상 정 일 : 2007. 5. 1.(제1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도로하천팀장 이종식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9829호)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(제3조)
 -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을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함.
 -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, 점용료 산정시 1원단위까지 산정 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
- 점용료의 산정기준표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별표2에 맞도록 조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동수)

【 法的檢討 】

-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점용료의 산정 기준은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있으며,

-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7년 2월 16일 입법예고 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음.

【 行政的檢討 】

- 금번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(점용료 인상)에 의거 연차별 적용하여야 할 충청북도의 정액제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맞도록 조례 제3조의 산정기준과 별표1의 점용료의 산정기준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-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계속 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10%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점용료 인상은 10% 내외로 제한하고 있음.
- 시·군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건교부의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 표에 맞도록 조정하고 있어 자치단체별 자체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제천시의 도로점용료의 그동안의 조정실적, 현실화율 등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등은 없는지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도로점용료의 현 징수액과 인상후 인상폭과 금액은?(김병창 의원)
- 전주 가로등 이와 유사한 것은 점용료가 690원으로 인상될시 전체 적인 도로점용료 증가액은?(유영화 의원)

나. 답변요지 <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>

- 현재 약 3억4천만원 징수하고 있고 3~5년 기간동안 매년 약13%씩 총 38%가 인상됨.

- 도로점용료 인상과 관련한 전체 점용료 증가액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데이터를 확보 하겠음.

5. 소 수 의 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